

국립나주문화유산연구소 기간제근로자(연구원 가급-교육·체험분야) 채용 최종합격자 공고

국립나주문화유산연구소의 기간제근로자(연구원 가급-교육·체험) 채용시험 최종합격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6년 7월 24일
국립나주문화유산연구소장

1. 최종 합격자

구 분	채용분야	응시번호
기간제근로자	연구원 가급	나주-03

2. 예비합격자

구 분	채용분야	응시번호
기간제근로자	연구원 가급	나주-04

3. 최종 합격자 제출 서류

- 제출기한 및 방법: 2026. 7. 29.(수)~31.(금) / 방문 또는 등기우편
- 제출장소: 국립나주문화유산연구소 학예연구실(전남 나주시 영산포로 263-23)
- 제출서류
 - 채용신체검사서 1부(2년 이내 건강검진 결과통보서로 대체가능)
 -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(상세) 각 1부
 - 주민등록등·초본 (남성의 경우 병역사항 포함) 각 1부
 - 결격사유 확인서 및 공정채용 확인서 각 1부(붙임 양식)
 -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(붙임 양식)
 - 사진(반명함판) 1매 및 통장사본 1부(급여지급용 계좌)

- 채용예정일 : 2026. 8. 3.(월)

3. 유의사항

- 제출된 서류에서 허위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.
-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결격사유 등에서 부적격으로 판정될 경우 임용하지 않습니다.
- 기타 문의사항은 국립나주문화유산연구소 학예연구실(061-339-1121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4. 채용서류 반환 안내

-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제11조(채용서류의 반환 등)에 따라 응시자(최종합격자 제외) 반환 청구기간 범위 이내에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반환 청구 기간 내 반환이 청구되지 않은 서류에 대해서는 절차에 따라 파기합니다. 단, 서류 원본에 한하여 반환하며(사본은 채용기관에서 일정기간 보관) 반환에 따른 비용은 신청자가 부담합니다.
 - 채용서류 반환 청구기간: 2026. 7. 27.(월) ~ 7. 31.(금)
-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[붙임 6] 서식의 반환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해 발송하거나 방문 시 직접 교부해드립니다.

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

본인은 국립나주문화유산연구소 기간제 근로자로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, 공정채용기준 제25조(채용결격사유)에서 정하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며, 위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될 경우, 채용이 무효가 된다는 사실을 확인 및 동의합니다.

① 「국가공무원법」 제33조(결격사유)

1. 피성년후견인
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
3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4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
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
- 6의2.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- 6의3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6의4.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·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)
-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- 나.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
7.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8.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
②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2조(비위면직자 등의 취업 제한)

1.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, 파면 또는 해임된 자
2.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(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)

③ 기타 관련 법령 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

2026년 월 일

채용예정자: (서명)

국립나주문화유산연구소장 귀하

국가유산청 공정채용 확인서

우리 기관은 「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(17.7.20.)」에 따라 기간제·파견·용역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(무기계약직)을 추진하였습니다.

이후, 「정규직 전환 관련 채용비리 방지」를 위한 지침(18.11.1./고용노동부)과 「국가유산청 공무원 등 근로자 공정채용 확립 추가 방안(18.11.7.)」에 따라 기관 종사자의 친인척 채용 등의 불공정 채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2017.5.12일 이후 입사한 근로자에게 다음 사항을 확인하고, 공정채용 확인서를 제출합니다.

- [illegible]

<< 작성예시 >>

- ① 해당지역 거주자로서 접근편의성 ② 평소 관심 있어 하는 분야
③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 정책발표에 따른 전환 희망 ④ 기타사유 등 상기 사유를 참고하여 자유롭게 기재

3. 국가유산청에 근무하는 직원 중에 친인척 관계에 있는 사람이 있다면 ()촌 이내의 관계로, ()에 근무 중인 (성명 :)이다.

- 3-1. (3번 답변 응답자만 작성) 친인척 등의 관계가 있는 자가 본인의 채용과 관련하여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고 (생각한다./생각하지 않는다.)

기재사항은 모두 사실이며, 추후 작성내용과 다른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계약해지 등의 관련 절차에 따르겠습니다. 또한 본 확인서 작성 시에 인지하지 못한 친·인척 관계가 추후 밝혀질 경우 채용비리 해당 여부 조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며 조사 결과에 따라 입사가 취소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.

2026 . . .

확인자 : (서명/인)

- 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 고지

- ① 수집.이용 목적
 - 공공기관 채용경로 조사 및 「정규직 전환 관련 채용비리 방지를 위한 지침」이행을 위한 채용비리 여부 조사, 감사자료 작성
- ② 수집.이용 항목
 - 성명, 소속, 직종, 소속기관 입사일자, 입사방식, 국가유산청 직원과의 관계 및 해당 직원 소속, 성명
- ③ 보유기간 : 재직기간동안 보유

국립나주문화유산연구소장 귀하

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

1. 이용기관 명칭 : 국립나주문화유산연구소
2. 이용사무(이용목적) : 신규채용 및 인사업무
3. 공동이용 행정정보(구비서류)

연번	행정정보명	연번	행정정보명
1	결격사유조회		
2	범죄경력조회		

※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, 여권번호,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.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기재하여 주십시오.(필요시 기재사항)

(☐ 주민등록 ☐ 여권 ☐ 외국인등록 ☐ 운전면허) 번호 :

4. 정보주체(본인) 동의사항

○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(공동이용 행정정보)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
※ 만일,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. 다만,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
2026 년 월 일

대상자 본인

성 명 : (서명 또는 인)

생년월일 :

전화번호 :